

대구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가단140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양버들

변론 종결2022. 8. 17.

판결 선고2022.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63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였는데, C이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는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하였고, B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7,588,51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1〉 B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2021. 10. 6. 기준)

1	2017년	법인세	2017.12.31.	2018.08.01.	2019.03.27.	83,019,790	48,922,970
2	2018년 6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8.06.	2019.02.01.	2019.03.27.	487,790	473,590
3	2018년 9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8.09.	2019.02.01.	2019.03.27.	475,360	461,520
4	2018년 3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8.03.	2019.02.01.	2019.03.27.	495,540	481,110
5	2018년 10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2018.10.	2019.02.01.	2019.03.27.	6,082,580	4,789,460
6	2018년 11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2018.11.	2019.03.01.	2019.03.27.	7,394,510	5,837,830
7	2018년 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8.12.	2019.04.21.	2019.12.05.	471,030	457,320
8	2018년	법인세	2018.12.31.	2019.06.01.	2019.12.05.	25,769,310	20,781,780
9	2018년	법인세	2018.12.31.	2019.08.01.	2019.12.05.	23,392,600	19,074,050
합계	147,588,510	101,279,630					

나. B는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B와 피고는 1977.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19. 9. 17.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제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위 표1의 순번 제 1내지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8, 9번 조세채권의 경우, C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18. 12. 31. 성립되었는바, 당시 B는 C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C이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C이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피고는, 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상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650,203,219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합계 552,588,510원²⁾ 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 B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순재산현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2)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나) 갑 제 5, 6, 9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9. 5. 13. B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9드단3266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10여일 전에 있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와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B는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상당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증여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5천만원과 전세권의 전세금채무 6,5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거나 피고에게 그 부담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³⁾, 그럴 경우 이 사건 증여 후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6,309,469원(650,203,219원 - 333,893,750원)이 되고, (실질적)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37,588,510원(552,588,510원 - 3억 1,500만 원(2억 5천만 원 + 6,500만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김범준

별지

- 1) 소극재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 2억 5천만 원과 전세권 설정액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2) 소극재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 2억 5천만 원과 전세권 설정액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3)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것이므로,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